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자 2022나62378 결정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

2. B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6회로 분할하여 2023. 7. 31.까지 4,000,000원, 2023. 8. 31.까지 4,000,000원, 2023. 9. 30.까지 4,000,000원, 2023. 10. 31.까지 4,000,000원, 2023. 11. 30.까지 4,000,000원, 2023. 12. 31.까지 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분할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외에는 원고의 이상돈에 대한 채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의 표 시

청 구 취 지 및 청 구 원 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23. 5. 18.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장윤선 판사 조용래

※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함에 유의).